

희망정기적금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희망정기적금(이하 ‘이 적금’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상호저축은행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적립식예금약관」의 제규정을 따른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한다.

제3조 가입대상 및 제출서류

- ① 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증명서 소지자(수급자증명서)
- ② 소년소녀가장, 모자가정, 조손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상 소년소녀가장, 모자가정, 조손가정
(가족관계증명서)
- ③ 저소득자, 기간제근로자 : 소득이 2,000만원이하이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로
확인이 가능한자(소득증빙서류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재직증명서)
- ④ 새터민 :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소지자(북한이탈주민 증명서)
- ⑤ 다문화가정 : 귀화자 또는 결혼이민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한 자,
단 가족 구성원 중 부모만 가입 대상(귀화자 또는 결혼이민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)
- ⑥ 학생 :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이하 중 학교장의 직인 및 사진이 있는 학생증 소지자가 직접 방문
(학생증)
- ⑦ 재래시장 상인 : 재래시장가맹점에 등록된 업주(사업자등록증)

※ 제출서류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(신분증 형태의 학생증, 북한이탈주민

증명서, 사업자등록증은 제외)

※ 가입조건 제출서류 이외에 예금계좌개설에 따른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음

제4조 계약기간 및 가입금액

-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한다.
- 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월 1만원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. 단, 학생의 경우 30만원 이하로 한다.

제5조 저축방법

이 적금은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일자에 일정한 저축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.

제6조 추가 이율적용

이 적금을 만기해지 하는 경우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며 우대이율은 신규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한다.

제7조 중도해지

고객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시점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.

제8조 제한사항

- ①이 예금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, 해약시 재가입이 가능하다.
- ②이 예금은 영업점 방문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다.